

실손의료비보장 중지 및 재개특약  
약 관

## 실손의료비보장 중지 및 재개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제3조(계약중지 대상 및 특약의 적용) 및 제6조(계약재개 대상 및 특약의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단체실손계약 :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 실손의료비 보장계약

마. 개인실손계약 :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비 보장계약

및 단체실손의료비 보장계약을 제외한 실손의료비 보장계약

## 2.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중지지급금 : 개인실손계약을 계약중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중지한 개인실손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중지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미경과보험료 포함)

## 제2관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 제3조 (계약중지 대상 및 특약의 적용)

- ① 계약중지 청약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계약의 계약자가 개인실손계약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실손계약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계약을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중인 경우
  2. 제1호의 개인실손계약의 피보험자가 단체실손계약의 피보험자인 경우
- ② 계약중지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실손계약의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의 계약중지 청약을 받고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중지 확인서’와 중지지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됩니다.

- ④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점부터 회사는 계약중지한 개인실손계약 보장종목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중지한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중지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개인실손계약의 보장종목이 계약중지 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를 청약할 때에 제9조(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처리)를 포함한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 계약중지되는 개인실손계약과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중지 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 제4조 (계약중지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조(계약중지 대상 및 특약의 적용) 제3항에서 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환입하고 계약중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계약으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중지 청약철회 신청시 이미 지급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환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철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 제5조 (계약중지 보장종목)

회사는 계약중지를 처리함에 있어 단체실손계약과 개인실손계약의 보장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종목을 계약중지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보장종목을 계약중지합니다.

## 제3관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 제6조 (계약재개 대상 및 특약의 적용)

- ① 제3조(계약중지 대상 및 특약의 적용)에 따라 개인실손계약을 계약중지한 계약자는 개인실손계약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계약재개'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실손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단체실손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재개를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재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재개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③ 단체실손계약의 보장종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의 보장종목 중 단체실손계약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종목에 대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이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주계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 ⑤ 제4항의 주계약의 소멸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④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⑥관

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함]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함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⑥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을 받고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⑦ 회사는 계약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계약중지되었던 개인실손계약이 계약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⑧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재개를 청약할 때에 제9조(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계약인수)를 포함한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과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재개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없이 이 특약의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제7조 (계약재개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재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회사는 해당 계약을 계약중지된 상태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 제8조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재개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또한, 회사가 계약재개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②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은 중지시점의 개인실손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재개 시점 기준으로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초과한 경우 또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개시점에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보유하는 개인실손계약이란 회사가 개인실손계약을 판매중지한 경우 당시에 판매했던 개인실손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하는 개인실손계약으로 계약재개되며,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보장범위 등은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장이 개시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제3조(계약중지 대상 및 특약의 적용)에 따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은 소멸됩니다.

#### 제9조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처리)

- ①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계약재개

를 승낙합니다.

1. 제3조(계약중지 대상 및 특약의 적용)에 따라 개인실손계약이 계약중지된 후 피보험자의 단체실손계약 보장공백기간(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해지, 재가입 지연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말하며, 단체실손계약의 보장종목 변경은 보장공백기간으로 보지 않음)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

다만, 보장공백기간 계산시 금번 단체실손계약 종료일(계약재개 계약자가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 이전에 개인실손계약을 중지·재개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계약 종료일을 말함)로부터 계약재개 청약일까지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대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다만, 회사가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계약을 판매하지 않거나 또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가. 보장종목

나. 보험가입금액

다. 자기부담금

라.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 ② 회사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계약이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등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3조(계약중지 대상 및 특약의 적용)에 따라 계약중지된 보험종목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제4관 기타 사항 등

### 제10조 (준용규정)

- ①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계약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 ②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의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 특약(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합니다), 특별조건부특약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계약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특약의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④ 이 특약의 제3조(계약중지 대상 및 특약의 적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계약의 약관을 따르며, 제6조(계약재개 대상 및 특약의 적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계약의 약관을 따릅니다.

#### **제11조 (계약중지 및 계약재개 운영 관련 기타사항)**

- ① 회사는 계약중지 및 계약재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